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별표3)

- 해양심층수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4차 위반시)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

나.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5)

-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청정시설 및 무균실의 정의를 명확화하여 민원인의 혼란 해소

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별표8)

-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명확화하여 행정청의 재량 소지 차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 4.)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하고, 같은 란 사목의 행정처분 기준의 4차 위반란 중 “3개월”을 “2개월”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3) 청정시설(에어샤워, 양압시설, 공기정화시설(헤파필터)을 갖춘 시설로서, 클래스 1,000이하의 공기청정도를 유지할 것)

4) 무균실(클린벤치 포함)

별표 8 제1호나목 후단 중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을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중전의 마목) 2)다) 중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정지처분기준에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조일이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서로 다른 날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마. 개별기준의 4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중 면허정지를 받은 후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4차의 행정처분기준에 4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더라도 그 면허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양심층수개발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 면허정지의 범위에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시설·장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취수행위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법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23조 제1항제1호	면허 취소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면허 취소	—	—	—
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	경고	면허 정지 15일	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2개월
라.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배수시설·저장시설·급수시설 등이 법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4호	경고	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3개월	면허 정지 6개월
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면허 정지 15일	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3개월	면허 정지 6개월
바. 법 제22조에 따른 취수중단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6호	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3개월	면허 정지 6개월	면허 취소
사. 해양심층수의 수질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	가. 수질기준 중 별표 4 제1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면허 정지 15일	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3개월	면허 정지 6개월

하지 않거나 법 제24조제2항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수질기준 중 별표 4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	면허 정지 15일	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2개월
	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면허 정지 15일	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2개월
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8호	경고	면허 정지 15일	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2개월
	나.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경고	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2개월	면허 정지 3개월
자.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9조에 따른 사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이행을 독촉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9호	면허 정지 15일	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2개월	면허 정지 3개월
차.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0호	경고	면허 취소	—	—
카. 면허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1호	면허 정지 3개월	면허 정지 6개월	면허 취소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기준

가. 기술인력의 자격

- 1)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해양학, 해양환경학, 환경공학, 해양환경공학, 해양미생물학, 해양식품공학, 어병학 및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2명** 이상으로 하되, **1명**은 2년 이상의 검사업무 경력을 **갖춰야** 한다.

2. 시설기준

검사시설은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해양심층수 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3. 장비기준

가. 일반분석 장비

- 1) 수소이온농도측정기[pH 미터를 말하며, 수온염분기록계(CTD)를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 2) 염분기록계 1대 이상[수온염분기록계(CTD)를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 3) 청정시설(에어샤워, 양압시설, 공기정화시설(해파필터)을 갖춘시설로써, 클래스 1,000이하의 공기청정도를 유지할 것)

나. 미생물에 관한 장비

- 1) 배양기 3대 이상
- 2) 현미경(배울 1천배 이상) 1대 이상
- 3) 멸균기 1대 이상
- 4) 무균실(클린벤치 포함)

다. 무기질에 관한 장비

- 1) 유도결합분광분석기(ICP-AES) 또는 유도결합질량분석기(ICP-MS) 1대 이상

2) 삭제 <2018. 12. 31.>

3) 분광분석기

4) 영양염(nutrient)자동분석기

5) 이온분석기(ion chromatography) 1대 이상

라. 취수해역 조사에 관한 장비(해양심층수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수온염분기록계(CTD) 1대 이상

2) 반돈채수기(van Dorn 採水器: 합성고무로 만든 원통모형의 물 퍼 올리는 기구) 또는 니스킨 채수기(Niskin 採水器: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물 퍼 올리는 기구) 3개 이상

마. 방사능 측정에 관한 장비(전문 방사능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는 방사능 측정에 관한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해양심층수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게르마늄 감마선 계측기 1대 이상

2) 섬광계수기 1대 이상

3) 베타계수기 1대 이상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8. 12. 3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조일이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서로 다른 날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마. 개별기준의 4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를 받은 후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4차의 행정처분기준에 4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더라도 그 영업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32조제1항제1호	허가 또는 등록취소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허가 또는 등록취소	-	-	-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마.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거나 같	법 제23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5일	1개월	2개월
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가.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유통기한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아. 법 제35조에 따른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자.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니한 경우 나.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9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차. 법 제42조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0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 취소	-
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1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	경고	허가 또는 등록취소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연 락 처	(044) 200 - 5241